

기계설비성능점검업 []등록
[]변경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등록 변경등록	25일 5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

신청인	상호 또는 법인 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영업소 소재지	
	(전화번호:)	
	성명(대표자)	
등록번호(변경등록 시)		

※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.

신규	자본금 및 자산평가액(필요시)		
	자본금	원, 자산평가액	원
등록	기술인력	명	장비
			따로 붙임

변경등록 신고사항

[] 상호 변경 [] 영업소 소재지 변경 [] 기술인력 변경 [] 대표자 변경

변경일

변경내용	구 분	상호 또는 법인 명칭	영업소 소재지	기술인력	대표자 변경
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
※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.

「기계설비법」 제21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·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·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수수료: 4만원(신규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-----	--

첨부 서류	제출 구분	신청인(법인의 경우 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	등록 [제출서류(제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)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]	1.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. 법인의 경우: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. 개인의 경우: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.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.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.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1. 사업자등록증명 2.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
	변경등록	1.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: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.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: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.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.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첨부서류 검토	➔	확인	➔	등록증 발급
신청인		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		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		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		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